

#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 2010. 9. 14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 회계감사)을 선출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이라한다)는 위원장 1인과 선거관리위원 5명을 둔다.
2. 선관위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고 집행한다.

제3조(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일 2일전까지 한다.
2.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의 미확인으로 인하여 선거당일 착오가 발생할 경우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 제 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선거일 현재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휴직자는 제외한다.

제5조(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개혁의지와 실천력이 투철한 자이어야 한다.

## 제 4장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제6조(선거공고)

1. 선거공고는 최소한 선거일 10일 이전에 한다.
2. 입후보등록공고는 선거일 3일 이전에 한다.

**제6조의1(선거일)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 전으로 한다.**

제7조(입후보자 등록)

1.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부위원장 1인을 지명하여** 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 기간 중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서식 1)
- 2) 추천인 명부 1부. (서식 2)

2. 사무국장, 회계감사 입후보자는 별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3.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기간 중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입후보자 자격심사)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입후보자를 결정하고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등록과 당선을 무효로 한다.

## 제 5장 선 거 운 동

제9조(선거운동시기) 선거운동 입후보등록일로 부터 할 수 있다.

제10조(유세)

1. 입후보자의 유세시간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2. 유세순서는 유세 10분전 추첨으로 정한다.

제11조(선거운동 시 금지사항)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금품, 금전배포
2.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
3. 타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
4.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함.
5. 선관위 지시 불응

제12조(벌칙) 제11조 각 항에 위반하는 입후보자에 대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경고하고 입후보자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을시 등록이 취소된다.

## 제 6장 선 거 방 법

제13조 본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대의원 10인을 선출 한다. 단,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단일후보일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신임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부결되면 제8장 제21조(재선거)에 준 한다.

2. 2인 이상의 후보일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3.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다수득표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2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령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5조(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입후보자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되고,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의해 10인을 기표하고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제16조(사무국장 선출)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선출된다.

제17조(회계감사 선출) 회계감사(3인)는 총회에서 호선을 받아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 제 7장 투표 및 개표

### 제18조(투표방법)

1. 기표는 투표인이 투표용지에 한 후보자를 선택하여 표시 한다. (단, 대의원 기표는 임원수 이내로 선택하여 표시한다)
2. 선거권자는 투표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선거권자는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된다.

### 제19조(무효투표)

1.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선거관리위원장의 검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에 한 후보자 기표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4. 훼손된 투표용지

## 제 8장 선거연기 및 재선거

제20조(선거연기)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21조(재선거)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가 무효(당선자 없을 경우 포함)로 결정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
3.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22조(보궐선거) 본 조합 임원이 궐위된 경우 이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단, 잔여 임기가 120일 이내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에 선거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선거규정 세부시행세칙

1992. 3. 7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선거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후보 등록 제출서류) 본 규정 제 7조에 따라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입후보 추천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후보자의 공고방법)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조(입후보자 사퇴의 신고)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후보자에 관한 공고) 입후보자 사퇴, 퇴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투표용지) 투표용지 하단에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날인한다.

제7조(투표인 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5일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투표인 제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9조(참관인) 개표시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 또는 2인이 선거참관인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운동)

가. 정의

1)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나.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공고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라. 후보자의 비방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와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지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마. 금품 제공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명목으로써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보고) 전조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나 선관위 위원장이 대회당일 날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칙의 개폐) 본 세칙 개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입후보자 이의신청) 입후보자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선관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당선자 확정 공고) 선관위는 당선이 확정되면 3일 이내에 당선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 무효)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의의를 제기하여 그 사실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3일 이내에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의결에 따른다.
2. (시행) 이 세칙은 1992. 3. 7부터 시행한다.